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6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6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2009년 7월 10일

제144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(대통령령 제20900호, 2008.7.3)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행정안전부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이양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

다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: 1,510명(변동없음)

- 지방공무원 종류별·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
(안 제3조, 제4조)
- 기구 증설과 관련 없는 정원(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)에 대해서는 조례로 총수만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
(안 제2조, 제5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본 개정조례안은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 임
- 총 정원은 1,510명(집행기관 1,482명, 의회사무기구 28명)으로 변동이 없으며
 -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
 - 일반직 78%이상, 기능고용직 20%이내, 별장정무직은 2%이내로 하고
 -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
 - 일반직 9급~4급이상, 기능직 10급~6급, 연구·지도직, 별정직 7급~6급으로 구분하여 종류별·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하였음
- 기구증설과 관련없는 정원(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 : 현재 1,419명)에 대해서는 조례로 총수만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